

농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산자조금 및 자조금단체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업 및 국가 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자조금”이란 자조금단체가 해당 농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조성·운용·관리하는 기금을 말한다.
2. “자조금단체”란 해당 농산물의 농업인 등이 제5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농산자조금을 조성·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다만,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축산물은 제외한다.
4. “농업인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
 - 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5. “거출금”이란 자조금단체의 회원이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자조금단체에 납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농산자조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② 농산자조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자조금단체

제4조(법인격) ① 농업인등은 자조금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각 자조금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각 자조금단체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자조금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사업) 자조금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제5조에 따른 자조금의 용도로 정한 사업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3. 그 밖에 자조금단체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창립총회) ① 자조금단체를 설립하려면 해당 농산물 자조금단체의 당연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농업인등 00명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회의의 일시, 장소와 함께 공고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는 적어도 회의 개최일의 2주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③ 발기인이 작성한 정관의 채택 또는 그 수정과 사업계획의 설정, 그 밖에 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창립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로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제7조(설립 인가) ① 발기인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마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 하여야 한다.

제8조(정관의 기재사항) 자조금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任免) 등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법인의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에 관한 사항
7. 거출금 및 그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존립 시기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남은 자산의 처리방법
10. 공고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회원) ① 자조금단체는 회원은 당연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 ② 해당 품목의 농업인등은 당연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특별회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자조금단체가 정관으로 그 자격을 정할 수 있다.
- ③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출금을 납부하고 자조금단체가 추진하는 사업과 활동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자조금단체를 설립할 수 없으며, 제4조에 따라登記하지 아니한 경우 자조금 또는 자조금단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1조(총회) ① 각 자조금단체는 정관으로 정하는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한 차례 정관으로 정한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 또는 회원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총회의 소집통지는 총회 개최일 7일 전에 개최 일시, 개최 장소, 회의 목적 사항을 적시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자조금단체의 합병·분할 또는 해산

3. 거출금의 산정기준과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면제의 기준
4.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감사보고서의 승인
6. 임원의 선임 및 해임
7. 생산·유통자율조절 조치의 결정
8. 총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9.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및 이사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대의원회) 회원의 수가 150명을 초과하는 자조금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할 수 있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임원) ① 각 자조금단체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1. 회장
2. 부회장
3. 이사
4. 감사

②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5조(이사회) ① 자조금단체의 사업 수행과 자조금의 조성·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자조금단체에 이사회를 둔다.

1. 거출금 거출시점 및 납부일자의 결정
2. 거출금의 수납
3. 자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과 결산 및 그 내용에 대한 총회 보고
4. 자조금의 운용, 관리 및 집행
5. 거출금 대납기관의 지정
6. 거출금의 수납위탁 관련 수수료 결정
7. 생산·유통자율조절의 집행
8. 그밖에 총회에서 위임하는 업무

② 이사회는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등을 이사회 구성원으로 할 수 있다.

-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여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자조금운용계획의 작성) ① 자조금단체는 매년 자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자조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지출계획은 사업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 ③ 자조금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조금운용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주요 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자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출금액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5 이하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자조금 운용에 사용되는 비용은 자조금 조성규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자조금운용계획 수립·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생산·유통 자율조절) ① 자조금단체는 해당 품목 농산의 생산·유통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이하 “생산·유통 자율조절”이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총회 또는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경작 및 출하 신고
2. 품질·중량 등 시장출하 규격 설정
3. 수출 등 유통조직 지정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을 위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자조금단체의 해산 사유) 자조금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자조금 폐지에 대한 총회의 의결
3. 합병 또는 분할
4. 설립 인가의 취소

제19조(자조금의 폐지) ① 회원은 자조금단체가 해당 농산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그 총회에 자조금의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자조금의 폐지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요청 사유와 찬반투표의 일정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 ③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자조금의 폐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 ④ 회장은 제3항에 따른 투표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투표로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조금의 폐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0조(청산 등) ① 자조금단체가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총회의 회장이 청산인(清算人)이 된다.

-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재산 처분의 방법을 정한 후 이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2회 이상 총회를 소집하여도 총회가 개의(開議)되지 아니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으로 총회의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 ④ 해산한 자조금단체의 청산 잔여재산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것 외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21조(준용규정) 자조금단체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제2항과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제22조(개선 등 조치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부의 출연 또는 지원을 중단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자조금단체의 거출율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
2. 자조금단체가 자조금 설치 승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한 때에는 제37조에 따라 출연 또는 지원을 한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개선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해당 농산자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농산자조금의 폐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의 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자조금의 폐지에 따른 수납중지) ① 회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조금의 폐지가 요청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조금의 폐지가 의결된 경우 또는 제22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조금의 폐지를 명한 경우에는 즉시 위원회 및 수납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위원회 또는 수납기관을 통한 거출금 수납을 중지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납의 중지와 관련하여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조금의 폐지가 요청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조금의 폐지가 의결되기 전 또는 제22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농산자조금의 폐지를 명하기 전에 이미 납부된 거출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납부가 지연되었던 거출금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자조금단체는 제20조제3항 또는 제23조제3항에 따른 자조금의 폐지가 결정된 때에는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집행 후 남은 금액은 정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3장 자조금의 설치 및 운용

제24조(자조금의 설치) ① 하나의 농산물 품목에는 하나의 자조금단체를 설립하여 하나의 자조금을 설치·운용·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특성을 고려할 때 2개 이상의 품목을 통합하거나 하나의 품목을 분리하여 자조금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을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자조금을 설치·운용·관리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품목의 통합 또는 분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자조금의 재원)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1. 거출금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3. 농산의 생산·유통·가공·수출·수입 등과 관련된 자로서 자조금단체의 회원이 아닌 자의 지원금 또는 기부금
4. 자조금 운용수익금 등 그 밖의 수익금

제26조(자조금의 용도)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농산의 소비촉진 홍보
2. 회원, 소비자, 거출금 수납기관 및 대납기관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3. 농산의 자율적 수급 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 활성화
4. 농산의 소비촉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및 이와 관련된 조사·연구
5. 자조금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
6. 거출금 납부율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조금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7조(거출금의 산정기준 및 한도) ① 자조금단체는 거출금의 금액을 회원 별로 해당 품목 재배면적이나 출하액, 판매액 등 경영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그 최대 한도는 해당 품목 평균 거래가격의 100분의 1로 한다.

- ② 자조금단체는 해당 농산의 특성상 거출금의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항에서 정하는 거출금의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농산의 평균 거래가격은 제3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작성하는 평균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

급·수요의 과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농산 시장가격이 현저하게 변동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반영하여 그 평균 거래가격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거출금의 산정기준과 거출한도 및 제2항에 따른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거출금의 납부) ① 자조금단체의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한 거출금을 납부기한 내에 자조금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거출금을 2개 이상의 자조금단체에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먼저 납부한 의무거출금의 금액만큼 감액하여 다른 자조금단체에 납부할 수 있다.

- ③ 자조금단체는 회원이 거출금을 직접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출금을 대납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대납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납기관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납부일자 이내에 회원의 거출금을 대납하여야 하고, 대납 후 해당 회원에게 거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자조금단체는 회원에게 거출금 납부안내서의 발송이나 공시 등의 방법으로 납부대상, 납부금액, 납부방법 등 거출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목별 납부방법 등 의무거출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거출금의 납부 면제) 자조금단체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28조에 따른 거출금의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농산물을 소규모로 생산 또는 출하하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거나 사실상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재해 등 사유로 농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기된 경우
3. 폐업이나 휴업으로 해당 농산물을 생산 또는 출하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0조(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 제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조금단체의 회원에 대하여는 해당 농산물의 생산, 유통, 수급조절 등을 위한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31조(거출금의 수납위탁) ① 자조금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자조금의 수납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자조금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자조금의 수납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수납기관은 영업정지, 휴업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 또는 대납기관의 수납의뢰를 거부하거나 거출금 수납업무를 중단할 수 없다.

④ 회원 또는 대납기관이 수납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한 거출금은 자조금단체가 직접 징수하여야 한다.

⑤ 수납기관은 거출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출금의 수납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과오납금의 환급) 자조금단체는 회원이 착오 등으로 납부한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자조금단체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회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제33조(자조금의 운용과 관리) ① 자조금단체는 자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조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지출계획은 사업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③ 자조금 운용에 사용되는 비용은 자조금 조성규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조금의 조성, 자금운용계획 수립·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등 자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자조금회계의 구분) ① 자조금단체는 자조금에 관한 회계를 명확히 하고,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자조금단체의 자조금에 관한 회계처리 기준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공시) 자조금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조금의 조성·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36조(출연 또는 보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조금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자조금단체연합회의 설립) ① 자조금단체는 정보 교류 등을 통하여 자조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자조금단체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합회에 사무국을 둔다.

제38조(통계 등의 작성·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 및 농업인등 현황을 포함한 통계자료(이하 “통계등”이라 한다)를 작성·관리하고, 매년 자조금단체 등에 관련 통계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통계등의 작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정보 이용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계등을 작성·관리하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33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른 통계등의 작성·관리 및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농어업경영정보 등의 이용) ① 자조금단체는 임원 선출, 거출금 산정 및 부과, 교육을 위한 회원 명부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 중 해당 품목 농업인등의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및 재배지의 주소와 면적을 말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조금단체는 임원 선출, 거출금 산정 및 부과, 교육을 위한 회원 명부 작성의 목적으로만 이를 사용하여야 하며, 회원 명부 작성이 끝나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조금단체에 제공된 개인정보의 파기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자조금단체 회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40조(자조금 운용 평가) ① 자조금단체는 자조금의 건전한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자조금 사업의 계획, 집행과 자조금의 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자조금단체는 품목 특성 및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중장기 운영 및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조금의 통합·분리, 제36조에 따른 자조금단체에 대한 지원 또는 제22조에 따른 개선등 조치명령 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중장기 운영 및 발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단체를 육성하고 그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조금 신규 설치 지원
2. 자조금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3. 자조금 통합거출시스템 개발·운영 지원
4. 자조금단체별 맞춤형 연구개발 지원
5. 교육·홍보 등 분야별 매뉴얼 개발
6. 자조금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 등 역량강화 지원
7. 그 밖에 자조금단체의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전담기관의 업무, 지정요건 및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단체의 효율적인 거출을 위하여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지도·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단체를 감독하기 위하여 자조금단체, 자조금 대납기관 및 수납기관(이하 “자조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조금에 관한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실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려면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자조금단체등에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검사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그 밖의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45조~제48조 (생략)

부칙(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거출금의 납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00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면제 사유가 계속되고 있거나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사유가 있어 거출금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조금단체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산물에 대하여 설립된 자조금단체는 해당 농산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자조금단체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선출된 자조금단체의 대의원 중 농산물에 대하여 설립된 자조금단체의 대의원은 그 선출된 날에 이 법 제00조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본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산물에 대하여 설립된 자조금단체는 이 법 시행 후 0개월 이내에 제00조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 제00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주무장관의 인가를 받고, 제00조에 따라 임원을 선출하여 농림축산식품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산물에 대하여 설립된 자조금단체는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 법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⑤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산물에 대하여 설립된 자조금단체는 제4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 ⑥ 제4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농산물자조금단체는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당 농산물에 대하여 설립된 자조금단체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⑦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산물에 대하여 설립된 자조금단체의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의무자조금 사무국에 고용된 직원은 이 법에 따른 해당 농산물의 자조금단체에 고용된 직원으로 본다.

제4조(자조금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자조금 중 농산물 품목별로 설치된 농수산물자조금은 제0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조금으로 본다.

제5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의 규정에 해당하는 종전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 처분·신고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처분·신고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제1호 중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를 “----”로 한다.

② 밀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 중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참고 2] 농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제정 법률안 신구 대조표

〈현행〉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2024 제정안〉 농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p>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수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어업 및 국가경쟁력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제1조(목적) 이 법은 농산자조금 및 자조금단체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업 및 국가경쟁력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농수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과 「수산업·어촌·발전·기초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다만,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축산물은 제외한다.</p> <p>2. “농수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어촌·발전·기초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와 「수산업·어촌·발전·기초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경영체</p>	<p>1. “농산자조금”이란 자조금단체가 해당 농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조성·운용·관리하는 기금을 말한다.</p> <p>2. “자조금단체”란 농산물 품목의 농업인 등이 제5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농산자조금을 조성·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p> <p>3.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다만,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축산물은 제외한다.</p> <p>4. “농업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p>

<p>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라. 그 밖에 농수산자조금의 효율적인 조성·운용 및 거출금의 공정한 분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농수산물의 품목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p> <p>3. “자조금단체”란 제4호에 따른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농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p> <p>4. “농수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이란 자조금단체가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수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p> <p>5. “의무거출금”이란 농수산업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을 말한다.</p> <p>6. “임의거출금”이란 농수산업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을 말한다.</p> <p>7. “의무농수산자조금”이란 의무거출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설치된 자조금을 말한다.</p> <p>8. “임의농수산자조금”이란 임의거출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설치된 자조금을 말한다.</p> <p>9. “의무자조금단체”란 의무농수산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를 말한다.</p> <p>10. “임의자조금단체”란 임의농수산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를 말한다.</p>	<p>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p> <p><리목 삭제></p> <p><안 제2호로 이동></p> <p><안 제1호로 이동></p> <p>5. “거출금”이란 자조금단체의 회원이 제0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자조금단체에 납부하는 자금을 말한다.</p> <p><삭 제></p> <p><삭제: 농수산자조금에 포함></p> <p><삭제: 농수산자조금에 포함></p> <p><삭제: 자조금단체에 포함></p> <p><삭제: 자조금단체에 포함></p>
<p><신설></p>	<p>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농수산자조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p> <p>② 농수산물자조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p>

제2장 의무자조금	제2장 자조금단체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제4조(법인격) ① 농업인등은 자조금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p> <p>② 각 자조금단체는 법인으로 한다.</p> <p>③ 각 자조금단체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p> <p>④ 자조금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제5조(사업) 자조금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5조에 따른 자조금의 용도로 정한 사업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3. 그 밖에 자조금단체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p>제6조(의모자조금의 설치) ① 자조금단체가 의모자조금을 설치하려면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된 의모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또는 제12조에 따른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설치 목적 2. 재원 확보 방안 3. 삭제 <2020. 5. 19.> 4. 해당 품목 농수산업자를 대표하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p>제6조(창립총회) ① 자조금단체를 설립하려면 해당 농산물 자조금단체의 당연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농업인등 00명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회의의 일시, 장소와 함께 공고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공고는 적어도 회의 개최일의 2주일 전에 하여야 한다.</p> <p>③ 발기인이 작성한 정관의 채택 또는 그 수정과 사업계획의 설정, 그 밖에 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p> <p>④ 창립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로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u>의무자조금을 설치하려는 자조금단체는 제1항에 따라 실시된 투표의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투표일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u></p> <p>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요건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제7조(설립 인가) ① 발기인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마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은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제8조(정관의 기재사항) 자조금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 및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任免) 등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법인의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에 관한 사항 7. 거출금 및 그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존립 시기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남은 자산의 처리방법 10. 공고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자조금이 아니면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용어를 사용한 자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p>	<p>제9조(회원) ① 자조금단체는 회원은 당연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해당 품목의 농업인등은 당연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특별회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자조금단체가 정관으로 그 자격을 정할 수 있다. ③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출금을 납부하고 자조금단체가 추진하는 사업과 활동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p>
<p>제9조(총회의 설치 등) ① 의무자조금단체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로 구성하며 의장 1명, 부의장 1명 및 2명 이상 5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③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권한 및 직무에 관한 사항 2. 의장, 부의장 및 감사 후보자의 자격, 등록, 등록, 선거에 관한 사항 3.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선출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p> <p>제10조(총회의 운영)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의무자조금단체의 정관으로 정한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p>	<p>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자조금단체를 설립할 수 없으며, 제4조에 따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자조금 또는 자조금단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p> <p>제11조(총회) ① 각 자조금단체는 정관으로 정하는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제1항에 포함> <안 제14조에 포함> <삭제></p> <p>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한 차례 정관으로 정한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 또는 회원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p>

<p>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p> <p>2. 재적 농수산업자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p> <p>3. 제13조에 따른 의문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p> <p>4. 제15조제2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p> <p>② 총회는 재적 농수산업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농수산업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1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재적 농수산업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농수산업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제1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문자조금의 설치 및 폐지(제21조제4항에 따라 폐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의문기출금의 산정기준과 금액 및 한도 3. 의문자조금의 사업계획·자금운용계획 및 결산 4. 자금운용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주 	<p style="text-align: center;"><각 호 삭제></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③ 총회의 소집통지는 총회 개최일 7일 전에 개최 일시, 개최 장소, 회의 목적사항을 적시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제12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의 변경 2. 자조금단체의 합병·분할 또는 해산 3. 거출금의 산정기준과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면제의 기준 4.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의 승인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	--

<p>요항목의 지출금액 변경(10분의 2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5.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감사</p> <p>6. 제9조에 따른 총회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선출</p> <p>7.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 선출</p> <p>8. 제14조제2항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선출</p> <p>9. 제15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p> <p>10.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남부면제의 기준</p> <p><신설></p> <p>11. 총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p> <p>12. 그 밖에 의장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5. 감사보고서의 승인</p> <p>6. 임원의 선임 및 해임</p> <p><안 제6호로 통합></p> <p><안 제6호로 통합></p> <p><안 제6호로 통합></p> <p><안 제3호로 통합></p> <p>7. 생산·유통자율조절 조치의 결정</p> <p>8. 총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p> <p>9.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및 이사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p>
<p>제12조(대의원회) ① 농수산업자의 수가 150명을 초과하는 의무자조금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p>	<p>제13조(대의원회) ① 회원의 수가 150명을 초과하는 자조금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할 수 있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p>
<p><신설></p>	<p>제14조(임원) ① 각 단체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장 2. 부회장 3. 이사 4. 감사 <p>②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p>
<p>제13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의무자조금단체는 의무자조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p> <p>제16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업무)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p>	<p>제15조(이사회) ① 자조금단체의 사업 수행과 자조금의 조성·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자조금단체에 이사회를 둔다.</p>

<p>금의 조성 및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무대출금 거출시점 및 납부일자의 결정 2. 의무대출금의 수납 3. 의무자조금 사업계획과 자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과 결산 및 그 내용의 총회 보고 4. 의무자조금의 운용, 관리 및 집행 5. 제19조제3항에 따른 대납기관의 지정 6. 의무대출금의 수납위탁 관련 수수료 결정 7.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개정 8.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의 제정·개정 및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 <p>9. 총회에서 위임하는 업무</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출금 거출시점 및 납부일자의 결정 2. 거출금의 수납 3. 자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과 결산 및 그 내용에 대한 총회 보고 4. 자조금의 운용, 관리 및 집행 5. 거출금 대납기관의 지정 6. 거출금의 수납위탁 관련 수수료 결정 〈삭제〉 〈삭제〉 7. 생산·유통자율조절의 집행 8. 그밖에 총회에서 위임하는 업무 <p>② 이사회는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등을 이사회에 구성원으로 할 수 있다.</p> <p>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여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사회는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p> <p>④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제14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제1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농수산업자 중 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제12조에 따라 대의원회가 총회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사람)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납기관의 대표나 그가 지명하는 사람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소비자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의 대표나 그가 지명하는 사람

5. 의무자조금단체가 추천하는 학계 및 생산·가공·유통·수출·홍보·마케팅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관련 업계가 추천하는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②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두고, 위원장은 총회(제12조에 따라 대의원회가 총회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대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삭제 :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이사회로 통합>

<삭제 :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이사회로 통합>

⑤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자격요건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① 농수산업자 또는 대의원은 재적 농수산업자 또는 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총회 또는 대의원 회의에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1. 자조금 운용과 관련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2. 제32조에 따른 검사 결과 해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6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업무)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무거출금 거출시점 및 납부일자의 결정
2. 의무거출금의 수납
3. 의무자조금 사업계획과 자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과 결산 및 그 내용의 총회 보고
4. 의무자조금의 운용, 관리 및 집행
5. 제19조제3항에 따른 대납기관의 지정
6. 의무거출금의 수납위탁 관련 수수료 결정

<삭제 :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이사회로 통합>

<삭제 :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이사회로 통합>

<p>7.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 개정 8.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의 제정, 개정 및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총회에서 위임하는 업무</p>	
<p>제17조(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 자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자조금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지출계획은 사업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③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에 관한 회계를 명확히 하고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④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 자금운용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면 의무자조금 자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이 10분의 2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의무자조금 자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⑥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p>	<p>제16조(자조금운용계획의 작성) ① 자조금단체는 매년 자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조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지출계획은 사업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안 제35조제1항으로 이동> ③ 자조금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조금운용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주요 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자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출금액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5 이하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제3항 단서로 이동></u></p>

⑦ 의모자조금 운용에 사용되는 비용은 자조금 조성규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모자조금의 조성, 자금 운용계획 수립, 변경 절차,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 의모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사무국의 설치 등) ① 의모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모자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모자조금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사무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모자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개 이상의 품목을 통합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운영은 사무국 운영규정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모자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의모거출금의 납부) ① 의모자조금이 설치된 농수산물의 경우 농수산업자는 의모자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납부일자 이내에 총회에서 의결한 의모거출금의 금액을 의모자조금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납부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영세 농수산업자에 대하여는 그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모거출금을 2개 이상의 자조금단체에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먼저 납부한 의모거출금의 금액만큼 감액하여 다른 자조금단체에 납부할 수 있다.

③ 농수산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접 의모거출금을 납부하기 어

④ 자조금 운용에 사용되는 비용은 자조금 조성규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자조금운용계획 수립,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안 제29조제1항 및 제30조로 이동>

<안 제29조제2항으로 이동>

<안 제29조제3항으로 이동>

러운 경우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무거출금을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대납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거출금을 대납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대납기관”이라 한다)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납부일자 이내에 농수산업자의 의무거출금을 대납하여야 하고, 대납 후 해당 농수산업자에게 의무거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거출금 납부안내서의 발송이나 공시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납부대상, 납부금액, 납부방법 등 의무거출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농수산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목별 납부방법 등 의무거출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제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농수산업자에 대하여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 수급조절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의무거출금 수납의 위탁) 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무자조금의 수납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수납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의 대표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납기관은 영영정지, 휴업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수산업자 및 대납기관의 수납의뢰를 거부하거나 의무거출금 수납업무를 중단할 수 없다.

<안 제29조제5항으로 이동>

<안 제29조제6항으로 이동>

<안 제31조로 이동>

<안 제32조제1항으로 이동>

<안 제32조제3항으로 이동>

<p>③ 수납기관이 <u>의모거출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다음 달 20일까지 의모자조금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u> 다만, 납부가 지연될 경우 지연된 금액에 하루에 1만원의 3의 단리를 지연된 기간만큼 적용하여 <u>의모자조금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u></p> <p>④ <u>농수산업자 및 대납기관이 수납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한 의모거출금은 의모자조금관리위원회가 징수하여야 한다.</u></p> <p>⑤ 수납기관은 <u>의모거출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u></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u>의모거출금의 수납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본문 삭제></p> <p style="text-align: center;"><단서 시행규칙으로 이동></p> <p style="text-align: center;"><안 제32조제4항으로 이동></p> <p style="text-align: center;"><안 제32조제5항으로 이동></p> <p style="text-align: center;"><안 제32조제6항으로 이동></p>
<p>제21조의2(생산·유통 자율조절) ① <u>의모자조금관리위원회는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또는 제12조에 따른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품목의 생산·유통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생산·유통 자율조절”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경작 및 출하 신고</u> 2. <u>품질·중량 등 시장출하규격 설정</u> 3. <u>수출 등 단일 유통조직 지정</u> 4. 그 밖에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사항</u> <p>② <u>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는 제1항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의모자조금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③ 제1항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을 위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u>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u></p>	<p>제17조(생산·유통 자율조절) ① <u>자조금단체는 해당 품목 농산물의 생산·유통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이하 “생산·유통 자율조절”이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총회 또는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경작 및 출하 신고</u> 2. <u>품질·중량 등 시장출하 규격 설정</u> 3. <u>수출 등 유통조직 지정</u> 4. 그 밖에 <u>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u> <p>② <u>회원은 제1항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에 따라야 한다. <단서 삭제></u></p> <p>③ <u>제1항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을 위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8조(자조금단체의 해산 사유) 자조금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자조금 폐지에 대한 총회의 의결 3. 합병 또는 분할 4. 설립 인가의 취소
<p>제21조(의무자조금의 폐지) ① 농수산업자는 의무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재적 농수산업자의 1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총회에 의무자조금의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p> <p>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 사유와 찬반투표의 일정 등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폐지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p> <p>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의무자조금의 폐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적 농수산업자의 2분의 1 이상이 의무자조금의 폐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된 때부터 의무자조금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p> <p>⑤ 의장은 제3항에 따른 투표 결과 또는 제4항에 따른 폐지 사실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투표일 또는 폐지일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p>	<p>제19조(자조금의 폐지) ① 회원은 자조금단체가 해당 농산물 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그 총회에 자조금의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p> <p>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자조금의 폐지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요청 사유와 찬반투표의 일정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p> <p>③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자조금의 폐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④ 회장은 제3항에 따른 투표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투표일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조금의 폐지를 공표하여야 한다.</p>

	<p>제20조(청산 등) ① 자조금단체가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총회의 회장이 청산인(清算人)이 된다.</p> <p>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재산 처분의 방법을 정한 후 이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③ 제1항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2회 이상 총회를 소집하여도 총회가 개의(開議)되지 아니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으로 총회의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p> <p>④ 해산한 자조금단체의 청산 잔여재산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것 외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p>
<p><신설></p>	<p>제21조(준용규정) 자조금단체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제2항과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p>
<p>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u>의무자조금단체 농수산업자의 해당 농수산물 생산량, 생산액 등이 전국 생산량, 생산액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이거나 의무자조금단체가 제6조제3항에 따른 의무자조금 설치 승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u>에는 정부의 출연 또는 지원을 중단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개선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u>의무자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무자조금의 폐지를 명할 수 있다.</u></p>	<p>제22조(개선등 조치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부의 출연 또는 지원을 중단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1. 자조금단체의 거출율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p> <p>2. 자조금단체가 자조금 설치 승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한 때에는 제37조에 따라 출연 또는 지원을 한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개선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해당 농산물자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농산물자조금의 폐지를 명할 수 있다.</u></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의 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⑦ 의장은 제3항에 따라 <u>의무자조금의 폐지가 의결되거나 제4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가 요청된 경우 또는 제6항 단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폐지를 명한 경우에는 즉시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수납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또는 수납기관을 통한 의무거출금 수납을 중지하여야 한다.</u>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u>의무자조금의 폐지가 의결되거나 제4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가 요청되기 전 또는 제6항 단서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를 명하기 전에 납부된 의무거출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납부가 지연되었던 의무거출금은 납부하여야 한다.</u></p> <p>⑧ <u>의무자조금이 폐지될 경우 의무자조금의 집행 후 남은 금액의 처리 방법 등 의무자조금 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u> 다만,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집행 후 남은 금액은 정부에 반납하여야 한다.</p>	<p>제23조(자조금의 폐지에 따른 수납중지) ① <u>회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자조금의 폐지가 요청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조금의 폐지가 의결된 경우 또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조금의 폐지를 명한 경우에는 즉시 위원회 및 수납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위원회 또는 수납기관을 통한 거출금 수납을 중지시켜야 한다.</u></p> <p>② <u>제1항에 따른 수납의 중지와 관련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라 자조금의 폐지가 요청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조금의 폐지가 의결되기 전 또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농산물자조금의 폐지를 명하기 전에 이미 납부된 거출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납부가 지연되었던 거출금은 납부하여야 한다.</u></p> <p>③ <u>자조금단체는 제20조제3항 또는 제23조제3항에 따른 자조금의 폐지가 결정된 때에는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집행 후 남은 금액은 정부에 반납하여야 한다.</u></p>
<p>제21조의2(생산·유통 자율조절) ① <u>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해당 농수산물 농수산업자 또는 제12조에 따른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품목의 생산·유통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생산·유통 자율조절”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안 제18조제1항으로 이동></p>

<p>1. 경작 및 출하 신고</p> <p>2. 품질·중량 등 시장출하규격 설정</p> <p>3. 수출 등 단일 유통조직 지정</p> <p>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사항</p> <p>②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는 제1항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제1항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을 위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안 제18조제2항으로 이동> <단서 삭제></p> <p><안 제18조제3항으로 이동></p>
<p>제3장 자조금의 설치 및 운용</p>	
<p>제3조(농수산자조금의 설치) ① 하나의 농수산물 품목에는 의무농수산자조금(이하 “의무자조금”이라 한다) 또는 임의농수산자조금(이하 “임의자조금”이라 한다) 중 하나의 자조금만을 설치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특성을 고려할 때 2개 이상의 품목을 통합하거나 하나의 품목을 분리하여 자조금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을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자조금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품목을 통합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자조금단체가 있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자조금단체로 통합하여야 한다.</p>	<p>제24조(자조금의 설치) ① 하나의 농산물 품목에는 하나의 자조금단체를 설립하여 하나의 자조금을 설치·운용·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특성을 고려할 때 2개 이상의 품목을 통합하거나 하나의 품목을 분리하여 자조금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을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자조금을 설치·운용·관리하게 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품목의 통합 또는 분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제7조(의무자조금의 재원) 의무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제25조(자조금의 재원)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무대출금 2. 정보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3. 농수산물의 유통·가공·수출·수입 등과 관련된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지원금 4. 의무자조금 운용수익금 등 그 밖의 수익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출금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3.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수출·수입 등과 관련된 자로서 자조금단체의 회원이 아닌 자의 지원금 또는 기부금 4. 자조금 운용수익금 등 그 밖의 수익금
<p>제4조(자조금의 용도)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홍보 2. 농수산업자, 소비자, 제19조제3항에 따른 대납기관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납기관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3. 농수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 4.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조사·연구 5. 자조금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 6. 자조금단체 가입을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또는 제24조에 따른 임의자조금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제26조(자조금의 용도)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산물의 소비촉진 홍보 2. 회원, 소비자, 거출금 수납기관 및 대납기관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3. 농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 활성화 4. 농산물의 소비촉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및 이와 관련된 조사·연구 5. 자조금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 6. 거출금 납부를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조금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제8조(의무대출금의 산정기준 및 한도) ④ 의무대출금은 농수산업자별로 해당 품목 제배면적이나 출하액 등 경영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그 한도는 해당 품목 평균 거래가격의 100분의 1 이내로 한다. 다만, 자조금단체는 해당 농수산물의 특성상 의무대출금의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p>	<p>제27조(거출금의 산정기준 및 한도) ① 자조금단체는 거출금의 금액을 회원별로 해당 품목 제배면적이나 출하액, 판매액 등 경영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그 최대 한도는 해당 품목 평균 거래가격의 100분의 1로 한다.</p>

<p>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u>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u></p> <p>② 자조금단체는 해당 농산물의 특성상 거출금의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 항에서 정하는 거출금의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은 제28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작성하는 평균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현저하게 변동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반영하여 그 평균 거래가격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② 자조금단체는 해당 농산물의 특성상 거출금의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 항에서 정하는 거출금의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은 제38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평균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급·수요의 과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농산물 시장가격이 현저하게 변동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반영하여 그 평균 거래가격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거출금의 산정기준과 거출한도 및 제2항에 따른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u></p>
<p>제19조(의무거출금의 납부) ①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농수산물의 경우 농수산업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납부일자 이내에 총회에서 의결한 의무거출금의 금액을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u>납부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영세 농수산업자에 대하여는 그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u></p> <p>② 제1항에 따른 의무거출금을 2개 이상의 자조금단체에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먼저 납부한 의무거출금의 금액만큼 감액하여 다른 자조금단체에 납부할 수 있다.</p>	<p>제28조(거출금의 납부) ① 자조금단체의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한 거출금을 납부기한 내에 자조금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의무거출금을 2개 이상의 자조금단체에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먼저 납부한 의무거출금의 금액만큼 감액하여 다른 자조금단체에 납부할 수 있다.</p>

<p>③ 농수산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접 의무거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무거출금을 대납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대납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대납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거출금을 대납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대납기관”이라 한다)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납부일자 이내에 농수산업자의 의무거출금을 대납하여야 하고, 대납 후 해당 농수산업자에게 의무거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p> <p>④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거출금 납부안내서의 발송이나 공시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납부대상, 납부금액, 납부방법 등 의무거출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농수산업자에게 알려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목별 납부방법 등 의무거출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③ 자조금단체는 회원이 거출금을 직접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출금을 대납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대납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납기관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납부일자 이내에 회원의 거출금을 대납하여야 하고, 대납 후 해당 회원에게 거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p> <p>④ 자조금단체는 회원에게 거출금 납부안내서의 발송이나 공시 등의 방법으로 납부대상, 납부금액, 납부방법 등 거출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목별 납부방법 등 의무거출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제29조(거출금의 납부 면제) 자조금단체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29조에 따른 거출금의 납부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규모로 생산 또는 출하하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거나 사실상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농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기된 경우 3. 폐업이나 휴업으로 해당 농산물을 생산 또는 출하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제19조의2(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제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농수산업자에 대하여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 수급조절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p>	<p>제30조(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 제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조금단체의 회원에 대하여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2년 간 해당 품목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 수급조절 등을 위한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p>
<p>제20조(의무거출금 수납의 위탁) 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무거출금의 수납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수납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의 대표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p> <p>② 수납기관은 영업정지, 휴업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수산업자 및 대납기관의 수납의무를 거부하거나 의무거출금 수납업무를 중단할 수 없다.</p> <p>③ 수납기관이 의무거출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다음 달 20일까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가 지연될 경우 지연된 금액에 하루에 1만분의 3의 단리를 지연된 기간만큼 적용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p> <p>④ 농수산업자 및 대납기관이 수납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한 의무거출금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징수하여야 한다.</p>	<p>제31조(거출금의 수납위탁) ① 자조금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자조금의 수납을 위탁할 수 있다.</p> <p>② 자조금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자조금의 수납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p> <p>③ 수납기관은 영업정지, 휴업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 또는 대납기관의 수납의무를 거부하거나 거출금 수납업무를 중단할 수 없다.</p> <p style="text-align: center;"><본문 삭제> <단서 시행규칙으로 이동></p> <p>④ 회원 또는 대납기관이 수납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한 거출금은 자조금단체가 직접 징수하여야 한다.</p>

<p>⑤ 수납기관은 의무거출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거출금의 수납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⑤ 수납기관은 거출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출금의 수납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제29조(과오납금의 환급)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임의자조금단체는 농수산업자가 착오 등으로 납부한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임의자조금단체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농수산업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p>	<p>제32조(과오납금의 환급) 자조금단체는 회원이 착오 등으로 납부한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자조금단체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회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p>
<p>제17조(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 자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의무자조금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지출계획은 사업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p> <p>③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에 관한 회계를 명확히 하고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p> <p>④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 자금운용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면 의무자조금 자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이 10분의 2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의무자조금 자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p>	<p>제33조(자조금의 운용과 관리) ① 자조금단체는 자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자조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지출계획은 사업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p> <p style="padding-left: 40px;"><안 제35조제1항으로 이동></p> <p style="padding-left: 40px;"><안 제17조제1항으로 이동></p> <p style="padding-left: 40px;"><안 제17조제2항으로 이동></p>

<p>지 아니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p> <p>⑥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p> <p>⑦ 의무자조금 운용에 사용되는 비용은 자조금 조성규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p> <p>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자조금의 조성, 자금 운용계획 수립·변경 절차,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 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안 제36조로 이동></p> <p>③ 자조금 운용에 사용되는 비용은 자조금 조성규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조금의 조성, 자금운용 계획 수립·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등 자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17조(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③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에 관한 회계를 명확히 하고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제34조(자조금회계의 구분) ① 자조금단체는 자조금에 관한 회계를 명확히 하고,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p> <p>② 자조금단체의 자조금에 관한 회계처리 기준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17조(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⑥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p>	<p>제35조(공시) 자조금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조금의 조성·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p>
제4장 보칙	
<p>제5조(출연 및 지원) ① 정부는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조금에 출연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36조(출연 또는 보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조금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8조(통계 및 통계자료의 작성·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 및 농수산업자 현황 등을 포함한 통계자료(이하 “통계등”이라 한다)를 작성·관리하고, 매년 자조금단체 등에 관련 통계등을 제공하여야 한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통계등의 작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정보 이용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통계등을 작성·관리하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33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제1항에 따른 통계등의 작성·관리 및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7조(통계 등의 작성·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 및 농업인등 현황을 포함한 통계자료(이하 “통계등”이라 한다)를 작성·관리하고, 매년 자조금단체 등에 관련 통계등을 제공하여야 한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통계등의 작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정보 이용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현행과 같음)</p> <p>(현행과 같음)</p>
<p>제28조의2(농어업경영정보 등의 이용) ① 자조금단체는 대의원 선출과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명부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업경</p>	<p>제38조(농어업경영정보 등의 이용) ① 자조금단체는 <u>임원 선출, 거출금 산정 및 부과, 교육을 위한 회원 명부 작성</u>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p>

<p>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 중 해당 품목 <u>농수산업자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및 재배면적을 말한다)</u>를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u> 이 경우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성 검토한 후 이를 제공할 수 있다.</u></p> <p>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조금단체는 <u>대의원 선출과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명부 작성을 위한 자료로만 이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의원 선거 및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명부 작성이 끝나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u></p> <p>③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조금단체에 제공된 개인정보의 파기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u></p> <p>④ 제1항에 따른 <u>농수산업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u></p> <p>제29조(과오납금의 환급) <u>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임의자조금단체는 농수산업자가 착오 등으로 납부한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임의자조금단체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농수산업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u></p> <p>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자조금이 아니면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용어를 사용한 자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p>	<p>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 중 해당 품목 <u>농업인등의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및 재배지의 주소와 면적을 말한다)</u>를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u> 이 경우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제공할 수 있다.</u></p> <p>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조금단체는 <u>임원 선출, 거출금 산정 및 부과, 교육을 위한 회원 명부 작성의 목적으로만 이를 사용하여야 하며, 회원 명부 작성이 끝나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u></p> <p>③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조금단체에 제공된 개인정보의 파기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u></p> <p>④ 제1항에 따른 <u>자조금단체 회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안 제33조로 이동></p>	<p style="text-align: center;"><안 제11조로 이동></p>
---	--	---	---

제31조(자조금 운용 평가) ① 의무자조금단체 및 임의자조금단체는 자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사업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2년마다 받고 그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평가업무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 평가의 절차 및 내용, 평가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자조금 운용 평가) ① 자조금단체는 자조금의 건전한 운용 및 관리에 위하여 자조금 사업의 계획, 집행과 자조금의 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조금단체는 품목 특성 및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중장기 운영 및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제2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조금의 통합·분리, 제37조에 따른 자조금단체에 대한 지원 또는 제23조에 따른 개선등 조치명령 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삭제>

<삭제>

④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중장기 운영 및 발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p>제41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단체를 육성하고 그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u></p> <p>② <u>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자조금 신규 설치 지원</u> 2. <u>자조금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u> 3. <u>자조금 통합거출시스템 개발·운영 지원</u> 4. <u>자조금단체별 맞춤형 연구개발 지원</u> 5. <u>교육·홍보 등 분야별 매뉴얼 개발</u> 6. <u>자조금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 등 역량강화 지원</u> 7. <u>그 밖에 자조금단체의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u> <p>③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④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u> 2. <u>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u> 3. <u>제6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u> ⑤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u>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	---

	<p>⑥ 전담기관의 업무, 지정요건 및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신설></p>	<p>제42조(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단체의 효율적인 자조금 거출을 위하여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2조(지도·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자조금단체, 임의자조금관리위원회, 임의자조금위원회, 대납기관 및 수납기관(이하 “자조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조금에 관한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실 등을 출입하여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려면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자조금단체등에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검사목적은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p>	<p>제43조(지도·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단체를 감독하기 위하여 자조금단체, 자조금 대납기관 및 수납기관(이하 “자조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조금에 관한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실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현행과 같음)</p> <p>(현행과 같음)</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u>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u>으로 정한다.</p>	<p>(현행과 같음)</p>
<p>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u>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u>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u>」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u>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u>」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그 밖의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u>」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u>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u>」에 따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그 밖의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5장 벌칙</p>	<p>제5장 벌칙</p>
<p>제34조~ 제37조 (생략)</p>	<p>제45조~제48조 (생략)</p>
<p>부 칙(안)</p>	<p>부 칙(안)</p>
	<p><u>제1조(시행일)</u> 이 법은 공포 후 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u>제2조(거출금의 납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u> 제00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면제 사유가 계속되고 있거나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사유가 있어 거출금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u>제3조(자조금단체에 대한 경과조치)</u> ① 이 법 시행 당시 「<u>민법</u>」 제32조에 따라 농산물의 품목에 대하여 설립된 자조금단체는 해당 농산물의 품목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자조금단체로 본다.</p> <p>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u>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u>」 제12</p>

<p>조에 따라 수출된 자조금단체의 대의원 중 농산물의 품목에 대하여 설립된 자조금단체의 대의원은 그 수출된 날에 이 법 제0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출된 대의원으로 본다.</p> <p>③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산물의 품목에 대하여 설립된 자조금단체는 이 법 시행 후 0개월 이내에 제00조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 제0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주무장관의 인가를 받고, 제00조에 따라 임원을 선출하여 농림축산식품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④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산물의 품목에 대하여 설립된 자조금단체는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 법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p> <p>⑤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산물의 품목에 대하여 설립된 자조금단체는 제4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p> <p>⑥ 제4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농산물 품목의 자조금단체는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당 농산물의 품목에 대하여 설립된 자조금단체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한다.</p> <p>⑦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산물의 품목에 대하여 설립된 자조금단체의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의무자조금 사무국에 고용된 직원은 이 법에 따른 해당 농산물 품목의 자조금단체에 고용된 직원으로 본다.</p>	<p>제4조(자조금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농수산물자조금</p>
--	---

	<p>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자조금 중 농산물의 품목별로 설치된 농수산물자조금은 제0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조금으로 본다.</p>
	<p>제5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의 규정에 해당하는 종전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 처분·신고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하는 이 법에 따른 처분·신고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p>
	<p>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p>
	<p>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제1호 중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를 “----”로 한다. ② 밀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 중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로 한다.</p>
	<p>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